

한국편목규칙의 표목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ules for Headings in the Korean Cataloging Rules

정 옥 경(Ok-Kyung Chung)**

목 차

- | | |
|--------------------------|-----------------------------------|
| 1. 서 론 | 3. 4 KCR3에 있어서 표목부와 관련된
제문제 |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 5 「한국문헌목록정보」에 있어서
인명표목의 문제점 |
| 1. 2 연구방법과 범위 | 4. 한국편목규칙 표목부의 개선방안 |
| 1. 3 선행연구 | 4. 1 기본표목의 선정 |
| 2. AACR 표목부의 변천과정과 체계문제 | 4. 2 표목에 표기되는 문자 |
| 2. 1 ICCP와 AACR | 4. 3 저자명표목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
| 2. 2 AACR과 AACR2 | 4. 4 표목통제를 위한 전거레코드의
작성지침 |
| 2. 3 AACR2와 AACR2R | 5. 결 론 |
| 3. 한국편목규칙의 표목부의 문제점 | |
| 3. 1 KCR의 편찬배경 | |
| 3. 2 ICCP와 KCR의 표목부 비교분석 | |
| 3. 3 KCR2에 있어서 표목부의 용어문제 | |

초 록

본 연구는 새로운 한국편목규칙의 표목부에 대한 일련의 합리적인 규칙을 고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CCP의 제원칙에 관한 성명, AACR, AACR2, AACR2R, KCR2, KCR3.1, 한국문헌목록정보, GARE 등을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표목부에 대한 새롭고 합리적인 편목규칙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동명이인 구별시 전공 주제명을 표시하기 위한 합리적인 주제명일람표를 고안하였다. 그리고 표목통제를 위한 전거통제 혹은 전거저록의 작성은 GARE에 준하여야 할 것이며, 표목부에 대한 규칙에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ise a rational rules for headings in a new Korean Cataloging Rule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has analyzed the Statement of Principles of ICCP, AACR, AACR2, AACR2R, KCR2, KCR3.1, KORMARC on Disc etc. And then it studied the problems resulting from the analysis and described a new and rational cataloging rules for headings. To distinguish those different persons of the same name, It need to be add a subject name belong to the author that distinguish different person of the same name. And so devised a rational subject name list. And the guideline for authority control or authority entry to control the headings will be based upon GARE. The guideline will be integrated in the rules for headings.

* 이 논문은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것임

** 인천전문대학 문헌정보과 교수

접수일자 2000년 6월 2일

1.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대의 편목규칙은 목록에 있어서 검색의 접근점이 되는 표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표목부와 이 접근점 하에서 자료의 서지적 실체를 식별하기 위한 서지기술사항을 규정하는 기술부로 대별된다. 그러나 韓國目錄規則 제3판은 다양한 정보자료 중에서 단행본에 대한 기술규칙만 규정하고 있을 뿐 표목부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는 불완전한 편목규칙이다. 또한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 Format)을 편찬하면서 이에 적용하기 위해서 편찬된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 기술규칙」(이하 KORMARC기술규칙)에서도 서지기술사항에 대한 기술규칙만을 규정하고 표목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KORMARC기술규칙에 준해서 입력된 「한국문헌목록정보」(CD-ROM 1997, 가을판)에서 보면 표목 특히 인명표목에 있어서 대단히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다.

KORMARC Format에서는 100, 110, 111, 130의 기본표목 필드를 보면 “이 필드는 개인명이 기본표목으로 채택될 경우에 사용한다”고 하였을 뿐 기본표목의 선정이나 그 기입형식은 어떻게 하라는 지시나 지침이 없다. 다만 한국정보관리학회의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에 관한 연구-단행본용포맷」에서는 “기본표목은 목록규칙에 의해 부여된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목록규칙인지를 알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KORMARC Format에서는 어떠한 기준에서 어떻게 선정하고 그것을 어떠한

형식으로 기술했던 상관없이 이미 선정된 기본표목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KCR3에 표목부에 관한 규정이 없이 단행본의 서지기술부만으로 된 미완성규칙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다.

그러므로 목록작성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하고 표준화를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편목규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KCR3의 표목부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도서관계의 당면과제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규칙과 포맷의 표준화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일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KORMARC와 KCR의 각각의 제정이 아닌 통합된 규칙의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일반화되고 있는 온라인환경에 부합되는 새로운 한국편목규칙의 표목부에 대한 일련의 합리적인 규칙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1. 2 연구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편목규칙으로 공인된 영미편목규칙(AACR) 표목부의 변천과정을 분석 고찰하고, 표목부의 용어와 체계문제를 분석하였다.

둘째, ICCP의 ‘제원칙에 관한 성명’이 한국 편목규칙에 어떻게 수용하였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韓國目錄規則 제2판(이하 KCR2) 표

목부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AACR2R에서의 해당 규칙과 비교 분석하였다.

넷째, 韓國目錄規則 제3판(이하 KCR3)에 있어서의 표목부와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한국문헌목록정보(CD-ROM 1997, 가을판)의 표목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여섯째, 기본표목의 선정문제와 표목에 사용되는 문자와 그 형식에 있어서 한국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일곱째, 표목에 대한 전거통제를 위한 레코드 작성법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분석 평가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온라인환경에 부합되는 새로운 한국편목규칙의 표목부에 대한 일련의 합리적인 규칙을 정립하기 위한 원칙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직접적인 분석대상 자료로는 ICCP의 '제원칙에 관한 성명', AACR, AACR2, AACR2R, KCR2, KCR3.1, 한국문헌목록정보, GARE 등을 사용하였다.

1. 3 선행연구

편목규칙의 표목부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편목규칙의 표목부에 있어서 서명기본표목의 방식이 요구된다거나 또는 기본표목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연구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외국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온라인환경에서는 종래의 편목규칙 전반에 대하여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한편 표목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

다. Michael Gorman(1992)과 Michael Carpenter(1992)는 편목규칙 전반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Arnold S. Wajenberg(1990), Ben R. Tucker(1992)와 R. Conard Winke(1993)는 표목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래의 편목규칙 전반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를 요한다는 주장'이나, '표목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다만 예측일 뿐이다. 그리고 특히 표목부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는 아직 외국의 문헌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2. AACR 표목부의 변천과정과 체계문제

본 장에서는 1961년에 국제편목원칙회의(ICCP)에서 채택한 '제원칙에 관한 성명'(Statement of Principles)과 이에 따라 AACR의 표목부에 대한 규칙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고, AACR과 AACR2, AACR2와 AACR2R을 비교 분석하여, AACR2R에 있어서 표목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1 ICCP와 AACR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 IFLA)은 편목규칙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1년에 파리에서 국제편목원칙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ing

Principles : ICCP)를 개최하였다.(Paul S. Dunkin, 1969, p.17) 본 회의의 목적은 1957년 7월 런던에서 개최되었던 예비회의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저자·서명의 자모순목록에 있어서 기입의 선택과 형식을 결정하는 기본원칙에 도달하기 위함이다. 이 회의에서 전술한바와 같이 Lubetzky의 목록규칙초안(Code of Cataloging Rules: Author and Title Entry, an Unfinished Draft)을 심의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목록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한 편목원칙을 설정하고 '편목원칙에 관한 성명'(Statement of Principles)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Lubetzky의 목록규칙초안을 그대로 채택한 것이다. 이 성명의 주요한 내용은 기본표목의 선정과 그 형식에 관한 제원칙으로 '편목원칙에 관한 성명'은 모두 12개조 30개항 35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1조부터 제7조까지 7개조 12개항이고, 표목부에 대한 핵심적인 규정이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5개조에 18개 항목이다.

ICCP의 원칙이 AACR에 있어서 기본표목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을 비교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ICCP에서는 단일저자의 저작과 단체저자의 저작을 각각 나누어 규정하였으나, AACR에서는 개인이든 단체이든 단일저자의 저작으로 묶어서 규정하였다.

둘째, ICCP에서는 헌법, 법률과 조약 그리고 비슷한 특성을 가진 저작에 대한 개략적인 원칙만을 규정하였으나, AACR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AACR에서는 ICCP의 12조항 '개인의 인명에 대한 표목어는 저자가 속해 있는 나라

의 관례나 저자가 사용하는 언어의 관례에 따라 결정한다'는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

AACR은 이상과 같은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이 ICCP의 원칙을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표준적인 국제편목규칙으로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편목규칙을 규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 2 AACR과 AACR2

1967년 AACR이 발행된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목록의 기계화와 정보유통을 위한 목록의 국제화 및 표준화를 위해 규칙의 개정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IFLA는 세계서지통제(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 : UBC)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서지기술법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할 계획을 수립하고, 1969년에 코펜하겐에서 국제편목전문가회의(International Meeting of Cataloguing Experts : IMCE)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모든 출판물의 표준적인 서지기술법을 제정하고 이 기술법이 각국의 국가기관에 의해 인준되도록 하고, 이에 관한 국가정보교환제도를 창설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이 경주되어야 하며, 이 제도의 효용성 여부는 서지기술법의 형식과 내용을 최대한으로 표준화하는데 달려 있다"(RIMCE, 1969, pp. 115-116)는 결의문을 작성하였다.

이어서 Jack Wells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단을 구성하고, 서지사항의 구분과 기재순서의 결정 등의 지속적인 작업을 수행하여 1971년 12월에 ISBD초안을 출간하였다.(Dorothy, 1978, p.145) 이 ISBD초안은 각국의

서지기관과 목록작성기관에 발송되어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1973년 8월에 그레노블에서 개최된 개정회의에서 이를 다시 검토하고 수정을 가해서 1974년 국제표준서지기술법-단행본용(ISBD(M))의 제1표준판(first standard edition)이 발행됨으로서 세계서지통정이 현실화되자 AACR도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AACR2의 규칙은 초판의 규칙을 발전적으로 통합시킨 것이며, 초판의 영국판과 북미판의 조정사항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규칙은 현재 대부분의 도서관과 서지작성기관에서 목록작성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AACR2의 구성체제는 제1부에서는 목록이 작성되는 대상자료에 대한 서지적 기술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제2부에서는 기술된 정보를 목록이용자에게 제시해주는 기본표목의 선정과 표목의 통제 및 이러한 표목에 대한 참조의 작성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AACR2는 초판과 비교해 보면 제1부가 제2부로 도치되는 동시에 세부적인 구성체제도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특히 저록과 표목(entry and heading)대신에 접근점(access points)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용어는 전통적인 카드목록에서 온라인목록에로의 변화를 의미한 것이다. 그러나 제2부에서 기본표목의 선정과 표목의 통제에 대한 원칙은 변경사항이 거의 없이 전판의 것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부분적으로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2. 3 AACR2와 AACR2R

1988년에 발행된 AACR2R은 AACR2의

기본적인 구조와 규정에 대한 개념은 변화하지 않았다. AACR2에서 잘못된 것이나 누락된 것을 바로 잡고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수정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명된 규칙을 완전히 새로 바꾸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은 규칙과 예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어떤 규칙은 용어를 새로 정하거나 재배열하였으며, 적절한 참조를 추가하기로 하였다.(AACR2R, p.xii-xiv)

AACR2R의 기본방침은 한 자료에 대한 표준적 기술이 기술부의 규칙에 따라 작성되면 목록의 저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그 기술에 표목이나 통일서명을 추가한다. 한가지 예외는 한 저록이 본서명을 표목으로 하여 작성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 저록은 기술부의 첫째 단어를 표목으로 하여 작성될 수도 있다.

각장에서 일반규칙은 특수규칙에 앞선다. 특정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정한 규칙이 없을 경우에는 좀더 일반적인 규칙을 적용한다. 또한 자료가 출판되는 매체에 상관없이 모든 도서관 자료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AACR2R. 20.1-20.2)

또한 AACR2R에서는 표목과 저록대신에 접근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는 전통적인 카드목록에서 온라인목록에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점을 확대하여 검색기능을 강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AACR2R의 제2부, 즉 표목부의 개정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일반적인 범주로 되어 있다.(Carlen Ruschoff, 1992, p.78)

첫째, 원본에서 소수의 오차를 잡았다.

둘째, 이용을 쉽게하기 위하여 규칙들을 재

배열하였다. 가장 광범하게 재조직된 것은 제 25장의 음악작품들을 위한 통일서명을 공식화하기 위한 규칙인 규칙25.25-25.35이다.

셋째, 규칙 적용을 간단하게 하고, 실제 관례를 표준화하고, 표목의 형식에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애매한 말을 재편성하고, 편목자들이 신속하게 표목을 구성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넷째, 편목 관례의 변화에 기인하여 개정 전개하였다.

3. 한국편목규칙의 표목부의 문제점

본 장에서는 한국편목규칙 표목부에 대한 일련의 합리적인 규칙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KCR2의 편찬배경, ICCP와 KCR2의 표목부와 의 관계, KCR2에 있어서 표목부에 쓰인 용어의 체계문제, KCR3에 있어서 표목부와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 및 한국문헌목록정보에 있어서 인명표목의 문제점 등을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3. 1 KCR2의 편찬배경

1961년 10월에 파리에서 개최된 ICCP는 모든 국가에 있어서의 표목과 기입어의 선택과 형식, 저자·서명의 자모순목록에 있어서 기입과 형식을 결정하는 기본원칙을 표준화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채택된 '편목원칙에 관한 성명(Statment of Principle)'은 저자명 기본저록원칙을 위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한국에 있어서 유일한 목록규칙이었던 박

봉석 편 '東書編目規則'은 서명 기본저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국제적인 원칙에 준하는 새로운 편목규칙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62년도에 한국도서관협회의 목록분과위원회는 ICCP에서 채택된 편목원칙에 따르기로 하고 그 취지에 맞는 편목규칙을 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결의하였다.

- (1) 표목은 한글로만 표기한다.
- (2) 외국인명, 서명 등은 한글 번자로 표기한다.
- (3) 저자명표목에 있어서 성과 이름 사이는 콤마를 사용한다.(KCR2, p.vi)

이러한 원칙에 따라 1962년말에 '표목의 선정'과 '표목의 형식'에 대한 규칙 (94개 조항)을 제정하여 '韓國目錄規則(案)'을 프린트판으로 발행하고, 이어서 1963년도에 '기술목록규칙'의 부문을 제정 완료하여 1964년에 발행했던 것이다. 그리고 2년 후인 1966년에는 수정판을 발행하였다. 이 수정판은 총 142개조로 크게 3부문으로 대별되는데 제1부문은 '기본기입의 선정', 제2부문은 '표목의 형식', 제3부문은 '기술목록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규칙은 전체142개 조항 중에서 표목에 관한 조항이 79개 조항이다.

3. 2 ICCP와 KCR2의 표목부 비교분석

1966년에 발행된 '한국목록규칙' 수정판의 서문에 보면, "1961년 10월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국제편목원칙회의에서 결정된 편목원칙을 그대로 따르기로 결의하였으나 다만 ICCP의

제원칙에 관한성명 중에서 11.14항과 11.2항은 예외로 하기로 하였다.(KCR2, 1966, p.v)

그러므로 ICCP에서 채택된 편목원칙이 한국편목규칙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ICCP에서는 개인저자의 저작과 단체저자의 저작을 각각 나누어 규정하였으나, KCR2에서는 AACR에서처럼 개인이던 단체이던 단일저자의 저작을 한데 묶어서 하나의 조항으로 규정하였을 뿐 내용은 동일하다.

둘째, ICCP에서는 헌법, 법률과 조약, 및 비슷한 특성을 가진 기타의 저작에 대해서 개략적인 원칙만을 규정하였으나, KCR2에서는 헌법, 법률, 조약 등을 각각 조항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상급단체에 종속되어 있는 단체에 대한 규정도 두 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양자 사이에 기본적인 원칙의 차이는 없다.

셋째, ICCP에서는 복수저작을 두 가지 조항으로 나누어 복합적으로 규정하였으나, KCR2에서는 이들을 공저서와 합저서로 나누고, 제2차로 공저서는 2-3인의 공저서와 4인 이상의 공저서로, 그리고 합저서는 주저자표시가 있는 경우와 저자의 수가 3인 이내의 경우, 그리고 저자의 수가 4인 이상의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양자 사이에는 기본적인 원칙의 차이는 없다.

넷째, ICCP에서는 전집에 관한 규정을 다섯 가지의 조항으로 규정했으나, KCR2에서는 이들을 합집과 총서 전집으로 구분하고, 다시 합집은 네 가지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또한 총서 전집도 두 가지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ICCP의

규정과 KCR2의 규정 사이에는 내용상의 차이는 없다.

다섯째, ICCP에서는 서명을 기본표목으로 하는 경우를 4가지 조항으로 규정하였으나 KCR2에서는 이를 크게 공저서, 합저서, 합집, 축차간행물 등 5가지로 구분하고, 축차간행물은 년감, 잡지, 총서 등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또한 ICCP에서 규정하지 않은 무저자명고전의 경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양자간에는 내용상의 차이점이 없다.

여섯째, ICCP에 의하면 인명에 대한 표목어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그 저자가 속하는 국가의 관행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KCR2에서는 규칙의 특정한 조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KCR2의 제정원칙 중에서 "표목의 형식을 한글로만 한다"(즉, 표목은 한글로만 표기한다)고 결의하였으므로 이것도 역시 ICCP의 원칙에 충실히 따른 것이다. 그러나 다만 KCR2의 제정원칙 중에 "姓과 이름 사이는 반드시 콤마를 사용한다"고 하고, 또한 KCR2의 42조에 "개인저자는 본명을 성부터 기입하고 성과 이름 사이에 콤마를 찍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 한 것은 ICCP의 원칙을 벗어난 것이다.

목록기입에서 인명은 그의 성명의 순위가 여하튼 간에 대부분의 경우 성이 그 기입의 기본요소가 된다. 따라서 그 성이 서양인명처럼 뒤에 오는 경우는 그것을 앞자리에 내 세 워 성·명의 순으로 바꾸어 기술하되, 그 도치 표시로 성과 명 사이에 콤마를 찍는 것이다. 그러나 한·중·일과 같이 한자 문화권에 있는 나라의 인명은 성·명의 순으로 되어 있으므로 성·명간에 콤마를 찍는 것은 잘 못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ICCP의 편목원칙 제12조항 '개인의 인명에 대한 표목어'를 제외한 대부분을 AACR의 경우 이상으로 KCR2에서도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3 KCR2에 있어서 표목부의 용어문제

KCR2에 있어서 표목부의 규정내용은 소략한 점이 있으나 그 체계와 순서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표목부를 2구분한 것은 좋았으나, 제1장의 제목을 “基本記入의 選定,” 제2장의 제목을 “標目形式”이라고 한 것은 그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다. 특히 記入이라는 용어는 日本語에서 전용된 것으로 우리 나라의 어의에 맞지 않고, 또한 영어로는 entry(著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적절하지 못하므로, 記入이라는 용어 대신에 표목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기본표목의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제2장에서는 표목의 형식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본표목이던 부출표목이던 상관없이 여러 가지의 표목과 그 형식 중에서 보다 확실하고 합리적인 표목을 선정하기 위한 규정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다시 요약해서 말하면 모든 표목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2장에서는 “표목의 통제”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KCR도 AACR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1편은 기술부로 하고, 제2편은 표목부로 하되, 그 제1장은 기본표목의 선정, 제2장은 표목의 통제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 4 KCR3에 있어서 표목부와 관련된 제문제

본 절에서는 한국편목규칙 표목부의 정립을 위하여 KCR3에서의 표목부와 관련된 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3. 4. 1 표목부에 대한 규칙의 미비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6년에 발행된 韓國目錄規則수정판까지는 빈약하나마 '基本記入의 選定'과 '標目的 形式'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KCR3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단행본에 대한 記述部 만을 수록하고 말미에 짚막한 '標目올림指示'편을 붙여서 발행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KCR3에는 표목의 선정과 그 형식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 서문에서 보면 “우선 급한 대로 완성된 記述篇과 標目올림指示篇을 첫권으로 꺼내고, 나머지 篇들은 그의 완성을 기다려 나중에 권을 달리해서 펴낼 작정이다”(KCR3, 1983, p.7)라고 했는데, 그 후 8년 후인 1990년에 발행한 3.1판에서도 標目에 대한 규정은 수록하지 않았으며, 15년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는 사항이다.

그런데도 그 서문에 보면 “標目에 대한 규정은 가급적 ISBD와 AACR2에 준거하느라고 애썼다”(KCR3, p.7)고 하고, “標目올림指示에 쓰이는 文字와 形式은 標目篇에서 규정한 標目的 그것과 똑같이 취한다”(KCR3, p.90)고 했기 때문에 KCR3에는 標目에 대한 규정도 있는 것처럼 독자들로 하여금 혼돈을 야기시키게 하였다.

3. 4. 2 서명기본표목으로의 오도

한편 기술부에 대한 규칙 중의 '줄머리자리

잡는법'에서는 "記述의 줄머리자리(indention) 잡는법은 첫줄 내쓰기식(hanging indention)의 기재형식을 취한다"(KCR3, p.27)고 되어 있으며, KCR3 마지막에 있는 '標目올림指示'에서도 첫줄 내쓰기식의 기재형식으로 예시되어 있다.(KCR3, 1983, p.91)

기타에도 KCR3에서는 '별법'으로 "줄머리 자리 잡는법을 모든줄다내쓰기식(block indention)으로 취할 수도 있다"고하고, 또한 "文段別 첫줄들여쓰기식(indented form)으로 취할 수도 있다"(KCR, p.91)고도 했으나 결국은 첫줄 내쓰기식의 기재형식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의 현장에서는 KCR3은 첫줄 내쓰기식의 기재형식이 원칙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서명이 기본표목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다. 표목올림지 시사항에서도 서명이 첫째의 표목으로 지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온라인목록의 실현으로 모든 기입이 대등한 접근점을 갖게 되었으므로, 저자기본기입법의 의미가 약화되었으며, 서명기입의 우위성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편목규칙에서는 저자기본기입을 배제하고, KCR3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서명으로 시작하는 기술방식의 도입이 요청된다'(김태수, 1991, p.101)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목록의 경우뿐만 아니라 종래의 카드목록의 경우도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기본표목이던 부출표목이던 검색을 위한 접근점으로서의 가치는 동일하다. 그리고 온라인목록에서는 서지기술사항에 기재된 모든 사항이 접근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표목은 도서기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도서기호는 문헌분류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서, 모든 著錄을 서명기본표목으로 하면 이것은 '동일한 주제 동일한 저자의 문헌을 동일한 서가 상에 배열한다'는 문헌분류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미 Cutter-Sanborn을 비롯한 기타의 모든 저자 기호법에 따라서 기호가 매겨진 장서의 배열 체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AACR을 비롯한 세계의 주요한 편목규칙들은 저자명을 알 수 없는 고전이거나, 네사람 이상의 저작이거나, 기타 특수한 저작 이외에는, 모두 저자명을 기본표목으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명 기본표목원칙을 배제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행을 위배하는 것이다.

3. 5 「한국문헌목록정보」에 있어서 인명표목의 문제점

본 절에서는 접근점으로 선정될 때 가장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 인명표목의 문제점을 한국문헌목록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KORMARC 기술규칙과 KCR3에는 표목부에 대한 규칙이 없는데 한국문헌목록정보의 1001에 기본표목의 자리가 지정되어 있고, 7001에는 저자부출표목의 자리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문헌목록정보(1997, 가을판)의 상세정보를 보면 기본표목의 선정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 하나의 예를 들면, 羅寬中이 저작한 三國志(演義)를 李文烈이 평역하여 三國志라는 서명 하에 전질 10권으로 民音社

에서 세 번(1988, 1990, 1994)에 걸쳐 발행된 바 있는데, 이들 중 어떤 권질은 '나관중'을 기본표목으로 선정하고, 어떤 권질은 평역자인 '이문열'을 기본표목으로 선정하고 있다.¹⁾ 성과 이름 사이에 콤마를 찍은 경우도 있고 찍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한국문헌목록정보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기본표목과 부출표목을 선정하고, 각 표목의 형식을 결정했는지 알 수가 없다. 여하간 이러한 현상은 현재 KCR3와 KORMARC기술규칙에 표목부에 대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목록작성자 임의로 원칙없이 편목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KCR3의 표목부에 대한 규칙의 제정이 시급한 과제이다.

둘째, 현재 KCR3에는 표목부에 대한 규칙이 없지만 KCR2에서는 우리 나라나 기타 동양인명의 경우도 한글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성과 이름 사이에 콤마를 찍고 있는데, 이것은 서양의 관행을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명표기법에 대해서는 이미 1971년도에 한국도서관협회에서 IFLA에 통보한(한국도서관협회, 1971, p.8-10) 바와 같이 姓名을 한글로 표기하던 혹은 영어나 기타의 외국어로 표기하던 본래 姓 다음에 이름을 기술하되 姓과 이름 사이에 콤마를 찍지 않는 것이 전통적인 관행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인의 인명을 한글로만 표기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우리나라의 姓氏는 同音異姓이 상당히 많아

한글로만 표기된 인명은 姓의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넷째, 이상의 예와는 오히려 반대의 경우이지만, 李를 "이"와 "리"로, 柳를 "유"와 "류"로, 羅를 "나"와 "라"로 하는 등 사람에 따라 표기를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에 李는 "이"로, 柳는 "유"로, 羅는 "나"로 표기하도록 호적법 시행규칙에 규정하였으므로 이 규정에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미 "리"와 "류", "라"로 표기된 표목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이상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漢字에는 同音異字가 많기 때문에 한국인의 인명은 同音異名도 상당히 많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同音異名

김영호: 金永虎, 金永浩, 金永鎬, 金英昊, 金英浩,
金英鎬, 金泳鎬, 金榮昊, 金榮湖, 金榮豪,
金榮鎬, 金瑩昊

그러므로 한국인의 인명에 대한 한글표기만으로는 각각의 인명이 개별화될 수가 없고, 따라서 각 저작자의 문헌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 한 자리에 정렬되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분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검색이 불편하고 또한 그 효율성이 저하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명표목은 한글로 표기한 다음 漢字의 인명을 기입해서 한자의 일정한 순서(컴퓨터에 입력된 한자코드 순)에 따라 배열해야만 각각의 인명이 개별화 될 수 있다.

1)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목록정보 = *Korean MARC on Disc*. 1997 가을판.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97. '이문열' 표목 하의 三國志참조.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 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4. 한국편목규칙 표목부의 개선방안

앞장에서 분석한 한국편목규칙 표목부의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본 장에서는 첫째 기본표목의 선정방안, 둘째 표목에 쓰이는 문자의 표기방안, 셋째 앞장에서 제시한 인명표목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넷째 표목의 통제를 위한 전거레코드의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기본표목의 선정

현대의 정보화환경은 목록 분야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 왔으며, 앞으로는 더욱 그 변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AACR2R과 USMARC에서도 온라인 환경에 합리적으로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현재까지 온라인 목록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신중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목록의 표목부에 대한 견해를 살펴 보면, Wajenberg(1990, p.495)는 “온라인목록을 위한 규칙은 결국 표목의 선정과 그 형식에 대한 규칙에서는 대단히 많은 급진적인 변화를 강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표목의 선정’이란 기본표목의 선정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그 형식’이란 기본표목 뿐만 아니라 모든 부출표목 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Tucker(1992, p.41)는 미래의

온라인환경과 관련해서 AACR2R에 있어서의 “표목의 형식을 위한 규칙에 있어서는 거의 변경이 없을 것이고, 기본표목의 선택을 위한 규칙에서는 몇 가지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접근점의 선택 (또는 표목의 선택)과 그 형식에 있어서 변경해야 할 이유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기본표목의 선정원칙’은 이미 제1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61년에 ICCP에서 채택한 ‘편목원칙에 대한 성명’의 주된 내용으로서 이 원칙이 1967년에 발행된 AACR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그 후 AACR2와 AACR2R에서도 변함없이 그대로 준수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Nancy B. Olson이 편찬한 *Cataloging Internet Resources: A Manual and Practical Guide*의 제4장 *Bibliographic Access*를 보면 “기본표목[MARC 100, 110, 111, 130 또는 1xx가 없을 경우 245]은 AACR2 제21장의 규칙에 따라 선정된다. Computer file의 기본표목은 없다”고 했으며, “부출표목[MARC 7xx]도 AACR2에 따라 작성된다”(Nancy B. Olson, 1998)고 하였듯이 필자의 견해도 온라인목록에서 표목부에 관련된 규칙은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기본표목은 그것이 도서기호의 대상이 되고, 동시에 분류번호와 함께 자료의 서가배열의 기준이 되므로 만약 이 규정을 변경한다면 기존의 서가배열체계와 앞으로의 배열체계가 상당히 달라지게 된다. 한편 ‘동일저자의 동일한 주제, 동일한 내용의 저작을 동일한 장소에 집결시킨다’고 하는 분류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서가배열에 있어서도

대단히 큰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실제의 도서관이 없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보 검색에 있어서도 검색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이러한 서가배열에 있어서의 대 혼란을 감수하면서도 종래의 규칙 또는 관행을 탈피해서 새로운 규칙으로 변환해야만 할 충분한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네 사람 이상의 공저서나 합저서에 대한 종래의 기본표목의 선정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4. 2 표목에 표기되는 문자

ICCP의 편목원칙의 제12항에 따르면, “한 개인저자의 인명이 여러개의 낱말로 이루어졌으면, 표목어의 선택은 가능한 한 그 저자가 속해 있는 나라에서 통용되는 관례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혹은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면, 그 저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례에 의해서 결정한다”(IFLA, 1971, p.xviii)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의 알파벳 목록저록에 있어서 첫 번째로 선택되는 개인의 인명에 대한 부분은,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있어서는, 여러가지의 국가적 언어적 관습에 따라 좌우되고, 또한 복합 성과 경칭이 앞에 붙는姓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많은 다양성이 있다. 그러한 인명에 대한 표목어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그 저자가 속하는 국가의 관행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IFLA 1971, p.119)는 것이다. 이 요건은 대체로 파리 규정 이후에 일반적으로 표목어의 선택에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 발행되는 모든 문헌에 대한 목록의 서지기술사항이나 표목에 대한 기입문자는 우리 나라 사람을 위해서나 외국인을 위해서도 모두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유용하고 합리적이다. 그러나 인명표목의 경우 배열의 기준이 되는 표목의 식별요소가 한글 인명만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술한 바와 같이 OPAC에서의 검색시 문제가 있다. 특히 OPAC의 간략정보에 접근한 이용자들의 경우 동명이인을 구별할 수 없다.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저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색된 저자들의 상세정보를 하나 하나 다시 확인하여야만 되는 불편함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원칙이 없이 동명이인을 배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명이인의 식별요소가 필요하다. 앞장에 제시한 것처럼 동명이인의 식별요소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한자문화권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한자인명의 한자는 식별상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동명이인의 1차 식별요소는 한자인명으로 하되, 표목인 한글인명과의 명확한 구별을 위하여 원괄호속에 묶어서 부기한다. 이러한 방법은 일본목록규칙, 중국편목규칙에서 적용시키고 있는 방식이다.

둘째, 1차 식별요소가 동일할 경우에는 2차 식별요소로 주제명을 부기하고, 2차 식별요소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3차 식별요소로 생몰년을 부기한다. 단 3차 식별요소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4차 식별요소로 한다.

셋째, 저자가 한글 이름(예를 들면, 한우리, 한셋별, 한초롱초롱 등)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글명 바로 다음에 주제명, 생몰년순으로 부

기한다.

이상과 같은 식별요소를 부기함으로서 이용자들이 찾고자 하는 저자의 저작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저작들까지 동시에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4. 3 저자명표목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문헌목록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종합도서목록,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의 도서목록에 있어서 저자명으로 간략정보에 접근하면 검색된 리스트의 서명난에는 서명의 '가나다' 순으로 배열되어 있고, 저자명난에는 漢字로 쓰인 저자명과 한글로만 표기된 저자명이 일정한 원칙없이 혼합되어 열거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인명에 대한 한글표기만으로는 각각의 인명이 개별화될 수가 없고, 따라서 각 저작자의 문헌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 한 자리에 배열되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분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용자들은 검색이 불편하고 또한 그 효율성이 저하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동명이인의 합리적인 구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 3. 1 동명이인의 구별방안

AACR2R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편목규칙에서는 姓名 다음에 그의 생몰년을 기입하여 동명이인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도 동명이인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 AACR2R에서는 다음의 예와 같이 생몰년 다음에 생년월일까지 기입하고 있다.(AACR2R, 22.17A)

이러한 이유는 표목의 배타성의 원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일명칭의 이서, 동명이인이거나 단체명 등 혼동을 피하고 각각의 표목을 식별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Smith, John, 1900 Jan. 10-

Smith, John, 1900 Mar. 2-

또한 생몰년 등이 미상일 경우는 AACR2R에서는 다음의 예와 같이 저자명 다음에 그의 지위 등을 표시하여 식별하고 있다.(AACR2R, 22.19B1)

Brown, George, *Captain*

Brown, George, *F.I.P.S.*

Brown, George, *Rev.*

Valmer, capitaine

Saur, Karl-Otto

Saur, Karl-Otto, Jr.

그러나 이상과 같은 방법은 목록을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동명이인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되지만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이용자들은 저작자들의 생몰년이나 저자의 사회적인 지위를 미리 알고 있을 가능성도 없으므로 그것이 이용자들의 식별요소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의 효율적인 검색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동명이인의 구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인명사전 및 각종 사전류를 보면 인명 다음에 한자를 부기한 뒤에 생

물년을 부기하고 있다. 모든 사전류가 이 순차를 따르고 있음은 인명 식별의 관용이 그렇게 굳어져 있음을 입증한다. 한자 문화권에 있는 한·중·일 삼국에 있어서 한자인명의 한자는 로마자 사용국에 있어 서구인명의 스펠링이상으로 식별상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자로 쓰여진 동양인의 인명은 표목에 있어서 한글로 표기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한자를 원괄호속에 묶어서 2차 식별요소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사전류의 관용과도 일치되는 용법으로서 가장 합리적인 형식이라고 판단된다.

예: 김영수 (金永秀)
김영수 (金永洙)

둘째, 2차 식별요소인 한자까지 부기하여도 동명이인이 동일할 경우에는 3차 식별요소로 주제명을 부기한다.

예: 김영수 (金榮秀) 정치학
김영수 (金榮秀) 법학

이와 같이 주제명을 부기함으로써 검색시 정확률을 높여 주고 동일한 주제분야의 관련 정보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셋째, 3차 식별요소까지 동일한 인명의 경우에는 4차 식별요소로 생몰년을 부기한다.

예: 김영수 (金瑩洙) 국문학 1917-
김영수 (金瑩洙) 국문학 1918-

넷째, 단 저자가 한글 이름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명 다음에 한칸을 띄우고 바로 주제명을 부기하고 그 다음에 생몰년을 부기한다.

예: 한셋별 수학 1960-
한셋별 국문학 1965-

4. 3. 2 주제명일람표의 작성방안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인명표목의 한글표기와 그 한자표기 다음에 주제명을 기입하자면, 인명표목 전반에 걸쳐서 주제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용하기 위한 정형화된 주제명일람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주제명일람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제명표목표', 즉 예를 들면; 미국 의회도서관의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LCSH)*) 나 우리 나라에서 이재철이 편찬한 '주제명표목표', 日本에서 편찬한 基本件名標目表 등과는 전혀 다르다.

이러한 주제명표목표는 목록에 있어서 주제명을 표목으로 할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가능한 한 세분된 전문주제명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인명 또는 저자명이 표목이 되는 경우 다만 同名異人을 식별하기 위해서; 첫째 저자명의 한글표기, 둘째 그에 대한 한자표기, 셋째의 식별요소로서 그 저자가 속해있는 주제영역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주제명표목표'를 여기에 적용할 경우 오히려 동일한 저자의 저작이 분산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우리 나라의 동명이인의 3차 식별요소인 주제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국십진분류법’(KDC4))에 전개된 주제명 중에서 우선 제1차로 유(類)와 강(綱)에 전개된 주제명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KDC의 유(類)의 주제와 강(綱)의 주제들을 그대로 ‘주제명일람표’에 수용할 수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서 이들 중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제외하고, 또한 KDC의 목(目)이나 혹은 세목(細目)에 전개된 항목이라 할지라도 반듯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제는 이를 선택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첫째, 종류와 그 밑에 전개된 항목 중에서 백과사전, 강연집, 연설문집, 일반연속간행물, 일반 학회 단체 협회 기관, 신문, 언론, 일반전집 총서, 향토자료 등은 주제명 또는 주제영역표시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은 모두 제외하고, 서지학, 문헌정보학, 저널리즘, 그리고 069에 전개된 박물관학만을 택한다.

둘째, 100 철학에서 전개된 항목 중에서 철학의 체계는 주제명이 될 수 없고, 형이상학, 논리학 등은 철학일반에 포괄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여기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다만 철학, 경학, 동양철학, 서양철학, 심리학, 윤리학만을 택한다.

셋째, 200 종교는 종교 한 항목만으로도 동명이인을 식별하기 위한 3차 식별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와 기독교가 가장 큰 종교로서 이들은 주제명으로 부여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들을 수용하고, 그 이하에서 전개된 종교는 모두 제외한다.

넷째, 300 사회과학은 포괄적인 주제로서 사회과학이라는 주제명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제외하고, 그 하위의

주제명을 모두 수용하되, 330에서 사회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사회학과 사회복지 두 가지 주제명을 수용한다. 또한 380에서는 민속학, 390에서는 군사학만을 채택한다.

대섯째, 400 순수과학은 역시 포괄적인 주제로서 순수과학이라는 주제명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그 하위의 주제명을 모두 수용한다.

여섯째, 500 기술과학도 역시 포괄적인 주제로서 기술과학이라는 주제명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기타의 주제명은 모두 수용하되, 다만 580 제조업은 주제명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다. 한편 510 의학에서는 한의학을 추가하고, KDC에서는 조선공학, 항공공학, 우주공학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러한 주제들은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들을 추가한다. 또한 520에서는 농업은 주제명이 아니므로 농학만을 택하고, 530에서는 공학일반으로 조정하며, 560에서는 전기공학과 전자공학을 별개의 것으로 수용하고, 590에서는 가정학만을 택한다.

일곱째, 600 예술은 역시 포괄적인 주제로서 예술이라는 주제명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기타의 주제명은 모두 수용하되, 630에서는 공예와 장식미술을 각각 별도의 주제로 채택한다. 690에서도 오락은 주제명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운동은 체육으로 수정하여 채택한다.

여덟째, 700 언어는 모든 어학을 포괄하는 주제임으로 이를 제외하는 반면, 701에 전개된 언어학을 채택하고, 710에서 780까지 전개된 모든

언어를 수용한다. 또한 790 기타제어 이하에서 전개된 그리스어, 라틴어, 켈트어, 범어, 팔리어, 이란어, 발트어, 러시아어 등을 더 추가한다.

아홉째, 800 문학은 모든 문학을 포괄하는 주제임으로 이를 제외하고, 810에서 880까지 전개된 각국의 문학을 모두 수용하는 한편, 890 기타 제문학에서 전개된 그리스문학, 라틴 문학, 켈트문학, 범문학, 팔리문학, 이란문학, 발트문학, 러시아문학 등을 더 추가한다.

열째, 900 역사는 역사라는 주제명과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만을 수용하고, 기타의 지역사는 모두 제외한다. 한편 980 지리는 그대로 수용하고, 990 전기는 전기만을 전공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다.

이상과 같은 원칙 하에 주제항목을 설정하되, 주제명의 배열은 KDC의 배열순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 이유는 이 주제명일람표는 편목자가 사용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편목자가 사용하기에 편리한 배열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KDC의 배열순에 따라 전제하면 다음의 <표 1>와 같다.

4. 3. 3 인명표목의 작성방안

전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저자명표목에 있어서 첫째로 저자명을 한글로 표기하고, 둘째로 그에 대한 漢字人名을 기입하고, 셋째로 저자가 전공하는 주제명을 한글로 표시하자면, 한국의 모든 저작자에 대해서 일일이 '저자명 전거 레코드'를 작성해야만 한다. 물론 목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저자명표목을 하나 하나씩 작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작업이 중복되거나 일관성이 없어지게 되므로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자명표목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자명전거 레코드'를 작성하고, 만약 이 전거레코드에 누락된 저자명 또는 새로운 저자명이 출현하는 경우는 목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한국의 인명표목을 위한 저자명전거 레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하나의 잠정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자명을 통하여 간략정보를 검색했을 때 동일저자의 저작이 일정한 순서로 나타나 있지 않고, 모두 서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문헌에 대한 상세정보를 검색하자면 同音異名이나 同名異人の 그 많은 저작들을 일일이 찾아서 자기가 필요한 자료인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더구나 앞으로 축적되는 문헌의 양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검색의 효율성은 점차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국의 저자명에 대해서는 정확한 전거레코드를 작성해야만 한다.

한국의 저자명전거레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은 우선 각각의 저작자에 대해서 한글로 표기된 저자명, 한자인명(원괄호 속에), 저작자의 전공주제명, 생몰년 순으로 기입하되 이들 각 사항은 한자씩 사이를 띄워둔다. 漢字人名을 알 수 없는 저작자에 대해서는 한자인명의 자리를 비워둔다. 이에 대한 실예를 들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이상에서 제시한 저자명전거레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각 저작자체에 나타나 있는 저작자에 대한 주요한 정보와 「韓國人名大事典」, 「現代韓國人名事典」, 근간의 「한국인명록」, 각

〈표 1〉 주제명 일람표

000(총류) 서지학 문헌정보학 박물관학 저널리즘	100(철학) 철학 동양철학 서양철학 경학 심리학 윤리학	200(종교) 종교 불교 기독교	300(사회과학) 통계학 경제학 사회학 사회복지 정치학 행정학 법학 교육학 민속학 군사학	400(순수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천문학 지학 광물학 생명과학 식물학 동물학
500(기술과학) 의학 한의학 농학 공학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화학공학 조선공학 항공공학 우주공학 가정학	600(예술) 건축술 조각 공예 장식미술 서예 회화 사진술 음악 연극 체육	700(언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그리스어 라틴어 켈트어 범어 팔리어 이란어 발트어 러시아어 언어학	800(문학) 한국문학 중국문학 일본문학 영미문학 독일문학 프랑스문학 스페인문학 이탈리아문학 그리스문학 라틴문학 켈트문학 범문학 팔리문학 이란문학 발트문학 러시아문학 기타제문학	900(역사) 역사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지리

언론사의 인물정보DB 등을 근거로 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4. 4 표목통제를 위한 전거레코드의 작성지침

전항에서 논급된 한국의 저자명표목의 작성

방안은 다만 한국의 고유명을 가진 단일저자의 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위한 방안일 뿐이다. 그러나 동일한 저자명에 있어서도 筆名, 異名, 雅號 등이 있고, 표목에는 저자명 이외에 주제명, 서명, 참조 등의 표목이 있으며,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도 주제명이 다른 경우가 있고, 동

〈표 2〉 한국저자명전거 데이터베이스 작성법의 예시

<p>김영수 김영수 (金永秀) 국문학 1933- 김영수 (金永秀) 수학 김영수 (金永洙) 건축공학 김영수 (金永洙) 국문학 김영수 (金永洙) 영어 김영수 (金永洙) 회화 1918- 김영수 (金永洙) 국문학 1941- 김영수 (金永壽) 국문학 1911-79 김영수 (金英洙) 윤리 김영수 (金英洙) 치과 1938- 김영수 (金英洙) 회계</p>	<p>김영수 김영수 (金瑛秀) 수학 김영수 (金映洙) 행정 1959- 김영수 (金泳洙) 디자인 김영수 (金榮秀) 정치 1942- 김영수 (金榮秀) 법학 1940- 김영수 (金榮秀) 영어 김영수 (金榮洙) 윤리 1935- 김영수 (金榮洙) 식품학 김영수 (金瑩洙) 동양고전 1917- 김영수 (金瑩洙) 국문학 김영수 (金瑩洙) 심리</p>
<p>김영호 김영호 (金永虎) 수학 김영호 (金永浩) 법학 김영호 (金永浩) 영어 김영호 (金永鎬) 국문학 1945- 김영호 (金英昊) 해운 김영호 (金英浩) 건축공학 1944- 김영호 (金英鎬) 가정학 김영호 (金英鎬) 법학 1950-</p>	<p>김영호 김영호 (金泳鎬) 경제 1940- 김영호 (金泳鎬) 사회복지 1938- 김영호 (金榮昊) 영어 1934- 김영호 (金榮湖) 경제 김영호 (金榮豪) 경제 1944- 김영호 (金榮鎬) 건축공학 김영호 (金榮鎬) 경제 김영호 (金瑩昊) 포장공학</p>

일한 책에 있어서도 異書名이나 대등서명이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정보검색을 위해서는 하나의 표목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정확한 근거자료(전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통일된 표목을 선정하고, 기타 筆名, 異名, 雅號, 또는 異主題名, 혹은 異書명이나 대등서명 등으로 이용자들이 검색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표목에서는 이미 선정된 표목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참조를 작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이 표목의 통제이며, 이 표목의 통제에 대한 기록을 전거저록(authority entry) 또는 통제기록(control records)이라고 한다.

Babara B. Tillett(1989, p4)에 의하면 “아마도 표목의 통제(control of headings)를 묘사하는데 접근점통제(access point control)라는 용어가 전거통제(authority control)보다도 덜 혼동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전거통제’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이것은 ‘표목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접근점통제’라는 용어보다도 혼돈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IFLA에서 제정한 ‘전거저록과 참조저록을 위한 지침’ (Guidelines for authority and reference entries = GARE)을 면밀히 살펴보면 전거통제는 직접적인 표목의 통

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된 표목'에 대한 전거를 통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표목의 통제에 대한 부수적인 통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내용상으로 보아 GARE의 표제를 '표목에 대한 전거저록과 참조저록을 위한 지침' (Guidelines for authority entries of headings and reference entries)이라고 생각하면 보다 쉽게 이해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예를 들면 AACR2R의 제22장 인명 표목(Heading for Persons)부터 참조(Reference)까지는 그것이 기본표목이던 부출표목이던 상관없이 여러 가지의 표목과 그 형식 중에서 보다 확실하고 합리적인 표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를 통제하는 규정들이다. 그리고 KCR2 제2장에서는 '표목형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이미 전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KCR2의 제2장은 '표목의 형식'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표목과 그 형식 중에서 보다 확실하고 합리적인 표목을 선정하고 이에 선정되지 않은 기타의 표목에서는 이미 선정된 표목으로 참조하도록 지시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AACR2나 KCR2 기타의 편목규칙 등, 전통적인 편목규칙에 있어서는 보라참조나 도보라참조를 작성하는 경우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이른바 전거)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도서관의 편목작업이 자동화됨에 따라 컴퓨터의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처리능력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정확한 정보통제를 요구하게 됨으로서 표목선정에 관련된 근거자료와 작성기관이나 시간까지도 밝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AACR2의 표목부에 대한 규칙과

는 별도로,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에서는 1984년에 목록에 있어서 표목의 통제를 위한 지침서로서 '전거표목과 참조저록을 위한 지침' (Guidelines for authority and reference entries = GARE)이라는 책자를 편찬하였다. 그리하여 1961년에 ICCP에서 채택된 '편목원칙에 관한 성명' (Statement of (Cataloging) Principles)이 '기본표목의 선정'을 위한 국제적인 지침이었다면, GARE는 '모든 표목에 대한 전거통제'를 위한 국제적인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GARE는 편목규칙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편목규칙의 표목부를 위한 국제적인 지침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Tillett(1989, p.2)에 의하면 "전거통제(authority control)는 적절한 참조로써 다양한 형식에서 유일하고 일관된 표목(접근점)을 제공하고, 편목규칙과 규칙해설에 주어진 조항에 따라 관련된 표목에 연결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표목통제'와 '전거통제'는 AACR2R 등의 편목규칙에 의해서 다양한 표목군 중에서 유일하고 일관된 표목이 선정되면, GARE에 따라서 이 선정된 (전거)표목에 대한 전거레코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보라참조'나 '도보라참조' 등을 작성하여 관련된 표목에 연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래에는 편목규칙에 의해서 절반정도의 '표목통제'가 이루어 졌다면, 이제 GARE에 의해서 '표목통제'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GARE에 의하면 이상과 같이 통제된 표목(controlled heading)을 authority heading(전거표목)이라고 하고, 이 전거표목을

설정된 근거가 되는 기록을 authority entry (전자저록)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전자저록은 통일표목 이외에 가능한 한 정보주기; 참조가 만들어진 모든 이형(異形)표목과 상관표목에 대한 기록(tracings); 참조한 자료원을 기록하는 주기 등; 그 저록에 대해서 그 편목기관이 책임을 진다는 확인 및 국제표준 전자데이터번호(ISADN) 등을 포함한다”(IFLA 1984, p.2)고 정의하고 있다.

전자저록의 구조에 대해서 말하자면 GARE의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 가지 구조를 나타낸다: 즉 전자저록, 참조저록, 일반 해설 저록이다.

GARE의 구조는 좀 복잡하고, 그 용어는 대부분 새로 만들어지거나 혹은 당면한 목적에 알맞도록 기존의 용어로부터 각색되고 변경된 것으로 때로는 좀 난해하다. 우선 앞서서도 이미 논급한 바와 같이 전자통제(authority control)라는 용어가 바로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한편 현재 GARE는 기본적으로 “개인명에 대한 표목; 회의와 지역적인 기관명을 포함한 단체명에 대한 표목; 무저자명 고전에 대한 통일서명” 등 세 가지 유형의 전자만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GARE에서는 주제명표목에 대한 전자; 총서에 대한 전자; 법률적 및 종교적 저작, 음악작품, 하나 이상의 서명으로 발행된 개인저자에 의한 저작 등을 다루기 위한 통일서명에 대한 전거는 당분간 제외되었다.

또한 GARE에서 하나의 주기로 밝힌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미진한 부분이 있다.

첫째, 현재의 지침서는 프린트 및 마이크로 프린트로 된 전자저록과 참조저록의 표시만 다루려고 시도된 것임을 주시해야 한다. 이 지침서에서 요약설명된 구조는, 비록 그것이 필연적으로 기계가독 포맷의 설계에 중요한 결실을 가져오겠지만, 기계가독의 전자레코드를 위한 구조로 직접 전환하려고 시도되지는 않았다. 다만 GARE의 실무집단은 현재 기계가독의 전자 레코드를 위한 구조에 관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재구성되고 있다.

둘째, 현재의 GARE에는 전자레코드에 국제표준전자데이터번호(ISADN)를 포함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나 그 형식이나 구조에 대한 세부사항은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GARE의 실무집단은 특히 기계가독레코드의 자동처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번호의 필요성을 도모했다. 그러나 그러한 번호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권한이 위임된 기관에 의한 번호매김이 어떻게 통제될 것인지 하는 세부사항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GARE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지침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GARE는 유일한 국제기구의 전문학자들에 의해서 편찬된 것이고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에 의해서 보완될 것이므로 우리는 이 지침을 충실히 따라야만 할 것이다.

5. 결 론

이상에서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AACR2R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편목규칙에서는 姓名 다음에 그의 생몰년을 기입하거나, 생몰년 다음에 생월일까지 기입하거나, 생몰년 다음에 저자의 전공분야를 표시하거나, 저자의 지위 등을 표시하거나, 적절한 명칭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저자의 생몰년월이나 사회적 지위 등은 그들의 식별요소가 될 수 없고, 다만 자기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 또는 전공분야와 부합되느냐가 주요한 관건이 된다. 그러므로 저작자의姓과 이름이 분명한 경우라도, 성명 다음에 저작자의 전공주제명을 표시하고, 同名異人으로서 전공주제도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 그 다음에 생몰년을 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전공 주제명을 표시하기 위한 정형화된 합리적인 주제명일람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주제명일람표에 의하여 일관성 있는 주제명을 표시하여야만 한다.
- 2) 저자명표목을 비롯해서 지명이 포함된 표목이나 단체명표목이나 참조에 있어서도 모두 정통적인 표목이 작성될 수 있도록 표목통제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GARE의 원칙에 따라 전거통제 레코드가 작성되고 그것이 서지기술 데이터와 손쉽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 3) AACR2R의 제22장 인명표목(Heading for Persons)에서 제26장 참조(Reference)까지 이들 5개의 장은 모두 그것이 기본표목이던 부출표목이던 상관없이 동일한 대상의 여러 가지의 표목과 그 형식 중에서

보다 확실하고 합리적인 표목을 선정하기 위한 규정들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표목의 형식이나 어떤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목록을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표목을 통제하는 규정들이다.

그러므로 한국편목규칙의 표목부는 크게 제1장 '기본표목의 선정', 제2장 '표목의 통제'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과 방법에 따라 정립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편목규칙에서 기본표목의 선정을 위한 규칙들은 우선 AACR2R의 part II chapter 21 Choice of Access Points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KCR2의 제1부 '基本記入의 選定'을 모두 수용하되, 특히 AACR2R에서 "Main entry heading"과 KCR2에서 "基本記入"이라는 용어는 모두 기본표목(main heading)이라고 수정하고, 기타의 용어들도 필요에 따라 현실적으로 부합하도록 수정 보완한다.

둘째, AACR2R이나 KCR2에서 기본표목 이외에 부출표목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한국편목규칙에서는 부출표목지시를 생략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온라인 목록에서는 모든 공저자나 역자나 서명 등이 모두 접근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표목의 통제를 위한 규칙은 우선 AACR2R의 part II chapter 22 Heading for Persons부터 chapter 26 References까지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되, 이 '표목의 통제'를 위한 장에서는 인명표목; 지명이 포함된 표목; 단체명표목; 통일서명; 및 전거통제와 참조 등 5개의 절(節)로 다시 구분하여 규칙을 전

개한다.

넷째, 표목의 통제를 위한 통제기록(control records) 혹은 전거저록(authority entry) 작성 지침은 GARE에 준하되, 이 표목의 통제를 위한 레코드의 작성지침은 별도로 편찬하지 않고, 표목부의 규칙에 통합하여 편찬하는 것이 더욱 유용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섯째, 저자명의 통제표목작성에 있어서는

저자명(한글표기와 한자표기) 다음에 그 저자의 전공주제명을 표시하고 同名異人으로서 전공주제도 동일한 경우에는 그의 생몰년을 기입하는 것이 더욱 유용할 것이다.

여섯째, 표목통제레코드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서지데이터베이스와 손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더욱 유용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태수. 1995. 표목의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 문헌정보관리학회지 제12권 제2호, pp. 9-35.
- 都台鉉. 1991. 自動化目録에서의 전거통제. 圖書館學論集. 제18집 pp. 217-243.
- 오동근. 1991. 編目規則과 MARC 포맷에 있어서 東洋資料의 書誌的 記述에 관한 比較分析.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_____. 1994. 典據統制에 관한 編目理論的 考察. 도서관, V.49 No.3, pp.31-43.
- _____. 1994. 典據레코드의 작성에 관한 研究 : 특히 GARE의 韓國的 適用과 관련 하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27집. pp. 75-97.
- 정필모. 1996. 온라인환경에서의 편목법. 도서관학논집, 제25집. pp.1-18.
- Anderson, Dorothy. 1978. IFLA's programme of ISBDs.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Vol. 32, No. 3, May-June, 1978.
- Capenter, Michael. 1992. Does Cataloging Theory Rest on a Mistake? In : *The Origins, Content, and Future of AACR2 Revised*. ed. by Richard P. Smiraglia. Chicago : ALA, pp. 95-102.
- Gorman, Michael. 1992. After AACR2R: The Future of the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In : *The Origins, Content, and Future of AACR2 Revised*. ed. by Richard P. Smiraglia. Chicago : ALA, pp. 89-94.
- Holley, Robert P. 1996. IFLA and International Standard in the Area of Bibliographic Control.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 21, No. 3/4, pp. 17-35.
- IFLA. 1984. *Guidelines for authority and reference entries*. IFLA International Programme for UBC.
- IFLA. 1991. *UNIMARC/Authorities : Universal format for authorities*. London, K.G. Saur.

- IFLA. 1971. *Statement of Principles : Adop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ing Principles* Paris, Oct., 1961. Annotated edition with commentary and examples by Eva Verona. London, IFLA Committee on Cataloguing.
- Kelm, Carol R. 1978.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Second Edition of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22, no.1. winter, pp. 23-24.
- McCallum, Sally. 1996. What Makes a Standard?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 21, No. 3/4. pp. 5-15.
- Olson, Nancy B. 1998. *Cataloging Internet Resources: A Manual and Practical Guide*. 2nd ed.(<http://www.oclc.org/oclc/man/9256cat/chap4.htm>)
- Ruschoff, Carlen. 1992. Changes to Part II, Headings, Uniform Titles and References. In : *The Origins, Content, and Future of AACR2 Revised*. ed. by Reichard P. Smiraglia. Chicago : ALA, pp. 78-88.
- Smiraglia, Reichard P. 1992. *The Origins, Content, and Future of AACR2 Revised*. Chicago : ALA.
- Tillett, Barbara B. 1989. Considerations for authority control in the online environment. In: *Authority control in the online environment: Considerations and practices*. ed. by Barbara B. Tillett. New York, Haworth Press, pp. 1-12.
- Tucker, Ben R. 1992. Interpretation of 1988 Revision. In: *The Origins, Content, and Future of AACR2 Revised*. ed. by Reichard P. Smiraglia. Chicago : ALA, pp. 39-42.
- Wajenberg, Arnold S. 1990. The Future of Cataloging Standards. In : *Illinois Libraries*. v.72, no.6, pp. 494-497.
- Winke, R. Conard. 1993. Discarding the Main Entry in Online Cataloging Environment.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 16, no.1, pp. 53-70.